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27 선고 2020가단476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5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9,587,235원 및 그 중 69,245,750원에 대하여 2019. 12. 27.부터 2020. 3. 19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김현주

별지